



서울동부지방법원

등본입니다.

판 결

2018. 2. 20.

법원주사



사 건 2017고정 [redacted]

피 고 인 [redacted] ([redacted]-0000000), 무직

주 거 서울 [redacted]

[redacted]

등록기준지 [redacted]

검 사 [redacted]

변 호 인 변호사 [redacted]

판 결 선 고 2018. [redacted]

주 문

피고인은 무죄.

이 유

1. 이 사건 공소사실

피고인은 [redacted]

[redacted]

피고인은 [redacted]

피해자 [redacted]





[Redacted text block]

2. 판단

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·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[Redacted text]

[Redacted text block]



[Redacted]
 [Redacted]
 [Redacted] 이 사건과는 그 내용도 전혀 다른 점 등을
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,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,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[Redacted] _____

